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2024.10.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시설급여비용(일반실)

분류		수가 (1일당)	본인부담금 (25.01.01기준)					
			1일당 (20%)	30일 기준				
				일반(20%)	감경(12%)	감경(8%)	기초 수급	식대포함 (일반대상자)
노인요양시설 (일반실) 2.1:1	1등급	90,450	18,090	542,700	325,620 (10,854)	217,080 (7,236)	무료	767,700
	2등급	83,910	16,782	503,460	302,076 (약10,069)	201,384 (약6,712)	무료	728,460
	3등급	79,240	15,848	475,440	285,264 (약9,508)	190,176 (약6,339)	무료	700,440
분류		수가 (1일당)	1일당 (20%)	본인부담금 (25.01.01기준)				
				30일 기준				
				일반(20%)	감경(12%)	감경(8%)	기초 수급	식대포함 (일반대상자)
노인요양시설 (일반실) 2.3:1	1등급	86,030	17,206	516,180	309,708 (약10,323)	206,472 (약6,882)	무료	741,180
	2등급	79,810	15,962	478,860	287,316 (약9,577)	191,544 (약6,384)	무료	703,860
	3등급	75,360	15,072	452,160	271,296 (약9,043)	180,864 (약6,028)	무료	677,160

※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함

◆시설급여비용(치매전담실)

분류		수가 (1일당)	본인부담금 (25.01.01 기준)						
			1일당 (20%)	30일 기준				기초 수급	식대포함 (일반대상자)
				일반(20%)	감경(12%)	감경(8%)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2등급								
	가형	94,220	18,844	565,320	339,192 (약11,306)	226,128 (약7,537)	무료	790,320	
	나형	84,800	16,960	508,800	305,280 (10,176)	203,520 (6,784)		733,800	
	3~5등급								
	가형	86,880	17,376	521,280	312,768 (약10,425)	208,512 (약6,950)	무료	746,280	
	나형	78,180	15,636	469,080	281,448 (약9,381)	187,632 (약6,254)		694,080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3.93%) 조정**되었음과 요양원의 **식사 재료비(식사+간식) 10,000원**으로 2024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2025년 1월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가 변동되어 적용 될 예정입니다.**